

미국과 일본의 범죄보환, 경찰취재 비교

梓澤和幸

변호사

이 글은 변호사인 필자가 미국의 보도사항을 시찰한 후 미국과 일본에서의 범죄보도, 경찰취재의 차이점을 일본이 신문협회가 발행하는 「신문연구」에 기고한 것을 전재한 것이다. 필자는 일본변호사협회 인권수호위원회가 1988년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보사사타조사를 위해 미국의 언론계를 시찰한 23명의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가했었다..... 편집자 주

방문이지는 워싱턴, 뉴욕, 미네소타의 3개소. 방문처를 그룹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두개로 된다. 첫째는 뉴스 미디어이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뉴욕 뉴스 데이」, 「더 레코드」, 「세인트폴 디스패치프레스」(미네소타 주 세인트폴 시), 「스타 트리본」(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시)의 각이지, 여기에 CBS, NBC의 TV국이 포함된다. 미디어에서는 범죄보도의 취재, 보도의 실정을 중심으로 사회부의 기자, 데스크급의 사람들, 고문변호사, 미디어기업내변호사 등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워싱턴 포스트」, 「스타 트리본」에서는 옴부즈맨과도 만났다 또 동경의 5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선발대는 9월 15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보스들에 들러 「보스톤 그로브」 「크리스천사이언스 모니터」의 옴부즈맨을 만났다.

둘째는 법원, 경내, 구치소 등의 그룹이다. 사건취재, 보도방식을 살피는데 있어 형사절차, 신병구속 등의 상황도 보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그룹의 일정을 기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워싱턴 특별구 지방법원, 배심법정의 견학, 전미법조협회(ABA)나 법률사무소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소송에 밝은 변호사의 강연, 뉴욕시경 공보과 방문, 미네소타 주에서는

주도(미니아폴리스)를 관할하는 헤네핀군구치소의 견학, 동군의 지방법원판사, 검사, 경찰서장, 공증변호사사무소장의 강연 등을 일정 속에 넣었다. 이 글에서는 조사에서 파악한 미국의 보도사정, 특히 경찰취재의 실태와 지(화)면상의 범죄보도의 상태, 인권에 대한 배려, 불만처리의 실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일본에서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려고 한다.

I. 수사정보의 공개

1. 법에 의해 공개를 의무화

뉴욕의 맨하탄에서 자동차로 40 분 정도 걸리는 곳에 뉴저지 주 하켄자크라는 도시가 있다. 우리 일행은 이곳에 있는 「더 레코드」를 방문했다. 이 사의 조사보도부 책임자인 부르스 로크린씨는 전미조사보도기자협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동씨와 제임스 에이헌씨, 그리고 머렌 변호사로부터 취재체제, 취재의 실정, 수사정보의 공개 등에 관해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동지의 발행부수는 일간이지 30 만부, 일요판 70 만부이다. 편집국의 진용은 100 명. 일본에서 말한다면 지방지의 중위권에 드는 규모라고나 할까.

사건·사고취재에는 4 명의 기자가 배속되어있으며 이 가운데 경찰에는 2 명의 기자가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동주의 23 개 도시에 1 명씩의 기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들 업무량의 10 분의 1 정도가 경찰취재에 총당되고 있다. 통상의 사건보도의 정보원은 경찰서장이나 공보담당의 간부(24 시간 연락이 취해진다)와의 전화조회, 경찰무선의 방수(타인간에 연락되는 무전을 무단히 엿듣는 일), 사람들로부터의 통보, 거기에 경찰로부터의 내부고발이다.

2 명의 경찰담당기자는 이 신문이 커버하는 94 개의 경찰서에 하루 5 회 내지 7 회의 전화를 건다. 통상 이 전화의 조회에 대해서는 그날에 있었던 모든 체포에 대해 이름, 주소, 피의사실, 체포시의 무기휴대 유무 등에 관해 대답해 준다. 이 가운데는 동지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든가 기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간부가 있어 전화상으로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자는 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가 서간부와 인터뷰하든가 경찰일지로 불리우는 노트를 보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 뉴저지 주에서는, 경찰서, 검사는 체포한 피의자를 24 시간 이내에 예심판사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간 안에 피의자를 고발하지 않을 때는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할 의무가 있다. 이 제한시간 내에 경찰은 언론으로부터의

요구(시민도 마찬가지)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름, 주소, 체포의 이유가 되었던 피의사실, 체포 시 무기휴대 유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주법과 주지사명령이 정하는 시민과 언론이,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같은 규정을 근거로 기자는 경찰일지에 기재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고 있다. 만약 경찰서장이 체포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거나 경찰일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주지사명령은 더 상세한 정보공개절차를 정하고 있다. 기자는 관할의 군검사에게 서와 기자간의 조정을 의뢰하든가 경찰서장 앞으로 명령을 내려주도록 의뢰한다. 검사가 체포정보를 모아서 그것을 기자에게 건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검사까지도 협력을 거부했을 때 기자는 법원에 공개를 구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경찰서 간부는 법정모욕죄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전화를 통한 조회만으로 모든 체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취재방법도 들은 바 있다. 구치소의 미결수목용 리스트는 필요한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이 리스트에는 보석절차로 석방된 사람의 이름, 보석금의 금액도 기록되어 있다. 통상의 보석금액보다 고액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특별한 사건으로 보고 그 정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까지 찾아가 사건의 경위를 듣는 취재방식도 있다. 뉴저지 주의 예를 상세하게 기술했는데 신병구속정보를 개시하는 취지의 법규정은 다른 주에도 있다. 워싱턴특별구에서는 워싱턴 경찰국 1968년 고시에 의해 체포자의 이름과 그 밖의 정보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체포로부터 336시간 이내에 신병을 법원에 인도해야만 하고 검사는 이 시간 안에 고발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법원에 보내진 모든 피의자의 이름, 주소, 고발유무, 죄명은 시민과 프레스가 접근된다. 즉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모든 피료포자의 이름을 시민도 언론도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신병구속정보에의 접근권리는 강제적인 수단의 행사라는 권력적 행위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취지가 해설서 등에 소개되어 있다. 일본의 생활을 소개하면서 경찰관의 자택을 밤중에 방문하여 취재하는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질문 자체가 재미있었던지 그러한 취재방식은 취하지 않는다고 간단하게 대답하고는 일본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반문한다. 특히 큰 차이점은 정예적인 설명이나 기자회견이 없는 일이다. 특별히 큰 사건, 오직, 피해자수가 많은 살인, 피해금액이 큰 절도사건 등에 한해 군검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정보공개제의 존부, 기자클럽의 존부가 이러한 차이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신문, TV에 공통적인 것인데 발표된 정보를 자사의 조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사건·사고보도에서도 철저한 것같이 생각되었다. 이러한 자세도 취재방법의 차이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의 차이

우리는 수사측의 주장만을 쓰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측의 주장을 쓰는 것을 되풀이해서 제언해 왔다. 일본에서는 체포보다 먼저 피의자측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경찰의 주장만을 전한 기사가 압도적이다. 그러나 그 실현을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도 가끔 제한되는데다가 경찰서의 유치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구치소에서 마저 기자는 신분을 밝히고 접견할 수 가 없다. 이 점 미국의 사정은 다르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부르고 싶다고 말하면 즉각 취조는 중단된다. 변호사의 입회 없이 작성된 수사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뉴욕시경의 공보관은 이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다. 미네소타 주의 헤네핀군구치소에서는 피의자는 구류 첫날 3 회, 이틀째부터는 무제한으로 매스컴을 포함한 외부와 전화연락이 가능하다. 전화요금은 상대방에서 부담하는 콜렉트콜이다. 미결의 피의자가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도주방지를 위해 한 사람의 감시자가 붙으나 외부에서와 꼭 같은 보통의 전화기를 쓰면서 자유스럽게 통화하고 있었다. 기자는 취재임을 알리고 만날 수 있으며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

II. 지(화)면의 차이

1. 범죄보준양과 무죄추정원리

대체로 범죄보도의 양이 적다. 극단적인 예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이다. 범죄현상을 논평하는 경우는 있으나 하나하나의 형사사건을 추적해서 보도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동지의 옴부즈맨인 바바라 엔트레스씨는 전해 주었다. 국제적, 전국적 기사를 취급하는 동지로서는 개개의 범죄기사에 뉴스밸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예를 별도로 하더라도 여러 도시에서 입수한 신문의 지면을 보았더니 범죄보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과 비교하여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정도였다. 「보스턴 그로브」, 「뉴욕 타임즈」, 「스타 트리뷴」, 「더 레코드」 등의 지면에서는 메트로폴리탄판(도민판이라든가 수도권판과 같은 지면을 말함)의 극히 일부에 밖에 범죄기사가 나오지 않는 일이 많다. 본래 미국에서는 모든 신문이 지방지인데 그 지방지 중에서도 사인의 범죄에 관한 뉴스는 한정된 지역의 뉴스로 취급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의 존 맥켄지 논설위원은 사건임을 전제하면서 「뉴욕에서는 범죄가 많으므로 살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뉴스가치가 없다. <뉴욕 타임즈>는 서해안에도 인쇄소를 갖고 있으나 전국지로서의 양상을 띠고 가면 갈수록 범죄보도기사는 뉴스가치가 내려가고 줄어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피의자는 유죄라는 합리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 한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 무죄추정의 사고방식은 미국시민에게 있어 공통의 시민적 사상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존멕켄지 논설위원은 무죄추정사상과 권력에 대한 회의주의는 미국의 시민과 언론의 건국 이래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에 잡힌 사람을 보고 「뭔가 했기 때문에 잡혔겠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무죄추정이라고 말하나 사건기자는 실제에 있어 어떠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더 레코드」에서 내놓아보았더니 「확실히 체포된 사람은 뭔가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문은 일단 기사화할 때에는 그 기사의 표현 속에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단정을 절대로 피해 여러 사람들에게 대한 악영향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이러한 배려에서 피의자=범인이라는 단정을 피할 뿐 아니라 「경찰이……라고 말했다」, 「……담당관……씨는……라고 말했다」, 「진술에 의하면」과 같이 전문임을 알 수 있는 문체가 태반이다. 또한 예단과 결부되기 때문에 수사관에 대한 자백은 물론 전과, 전역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 각지에 공통된 특징이다.

2 사인은 체포시 익명으로

「워싱턴 포스트」, 「세인트폴 디스패치프레스」, 「스타 트리뷴」의 각지에서는 공인 이외의 사인에 대해서는 체포되어서부터 고발될 때까지는 기사 속에 피의자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된다. 『김보르의 남자 살해되다. 용의자는 구류 중』 「71세의 김보르의 남자가 어제 새벽 침대 위에서 사살된 시체로 발견되었다. 용의자는 구류 중이다」라고 스텐즈군의 보안관은 말했다. 피해자는 딜 데이비드 로즈너씨로 밤 2시 15분에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살인이다 라고 보안관은 말했다. 보안관의 법률담당사무소는 오늘 고발할 예정이다. 보안관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통보가 왔다고 한다. 」(세인트폴 디스패치프레스 지 1988년 9월 22일자) 『가두일재검거로 14명 체포』 「세인트폴 서는 세인트폴시의 후로크다운지구에 매춘방지의 단속을 감행, 14명을 체포 또는 소환했다. 경찰에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 12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이 어제의 단속에서 소환되었다. 죄상은 매춘의 의도 하에 가두를 배회하였거나 매춘 그 자체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단속은 미네하하거리와 아룬델거리를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7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구류되었다」(동이지 동일일자)이러한 방식이다. 익명취급방식 외에도 발표자의 명시, 기자의 견문과 전문을 구별하는 문체 등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고발될 때까지 익명으로 취급하는 이유에 대해 「세인트폴 디스패치프레스」의 사회부 데스크인 제임스 도트슨씨는 우리조사단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측은 기소하는데 만족할만한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체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이름을 지면에 공표하면 그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II. 옴부즈맨의 지위와 역할

1. 옴부즈맨의 지위

「워싱턴 포스트」, 「보스톤 그로브」,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스타 트리뷴」의 4 지의 옴부즈맨을 만나보았다. 수집한 자료나 인터뷰내용을 일본의 기사심사기구를 옆두에 두면서 보고하려고 한다.

우리들은 그들이 계약상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보수는 일본에서의 부장직과 중역의 중간쯤이 된다는 인상을 받았다. 계약상의지위는 노동계약에서 보는 지휘종속관계가 아닌 위임계약 같은 것이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하워드씨는 옴부즈맨의 전신인 사내비평제도에 1년 반 동안 종사한 경험을 회고하면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탈피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이 옴부즈맨은 어떠한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인가. 옴부즈맨과 편집간부, 내셔널 프레스 카운슬의 경험이자(워싱턴 포스트), 이전의 경쟁이지 기자, 그 후의 오랫동안의 편집경험이자(보스톤 그로브), 논설위원(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금품회사의 PR 담당부장(스타 트리뷴)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신문의 사정에 밝고 설득력 있는 비판을 전개할 수 있고 그리고 독자 편에 서서 용감하게 주장을 펼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계약상 어떠한 독립성을 보장하더라도 제대로의 구실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실패 예도 있다고 전미옴부즈맨협회장인 「보스톤 그로브」, 「스타 트리뷴」에서는 옴부즈맨의 사무실이 편집국과는 떨어져 독립되어 있으며 answer telephone(부재중에 응답하고 용건을 녹음하는 장치)이 부착된 전화와 컴퓨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스톤 그로브」에서는 주 19시간의 파트타임의 비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서는 옴부즈맨의 방이 편집국과 칸막이만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옴부즈맨의 역할

옴부즈맨의 첫 번째 역할은 불만을 접수하는 일이다.

불만신청건수는 「보스톤 그로브」의 경우 1 주일에 100 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경우 1 주일에 50~60 건, 「스타 트리뷴」의 경우 1 년간 약 4,000 건이라고 한다. 불만에 대한 회답은 전화와 서신으로 한다. 응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부분 응답해준다.

두 번째의 역할은 불만의 내용을 사내에 전달하는 일이다.

컴퓨터에 입력시킨 불만의 복사본을 경영이자, 사내편집각국에 회람시킨다든지,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한다. 이 메모는 사외에는 내보내지 않는다. 「보스톤 그로브」의 최근의 사내메모의 복사본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롭다. 서두에 캐스더드씨의 짤막한 이야기가 있다. 「8 월 3 일부터 21 일까지의 사이에 접수한 불만은 401 건이다. 사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 또는 코멘트 할 사람은 옴부즈맨에게 연락을 바란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시킨 불만과 그에 대한 각각의 대응, 담당자의 의견이 적혀있다. 분량은 15 페이지. 접수된 불만의 내용은 가톨릭의 수사를 비꼬는 만화에 대한 반발, 대통령선거의 보도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항의, 병원취재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는 항의, 기사의 편집배정에 대한 불만 등 각양각색이었다. 그 중에서도 사진의 촬영, 게재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국민성 때문인지 비판도 준엄한 것이 많다. 준엄한 비판의 예를 들면 종교, 인종차별, 정치적인 불공평 등에 대한 불만에서는 구독을 끊겠다고 위협하는 것 등이다.

세 번째의 역할은, 옴부즈맨은 불만에 대해 편집국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일이다.

왜 이러한 지면이 만들어졌는가, 왜 어떠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는가라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취재기자, 편집기자 측의 주장이나 사정을 조사한 다음 독자와 옴부즈맨의 주장을 들이댄다. 옴부즈맨인 캐스디드씨는 이 편집국 사람들과의 토론결과를 반드시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며 때로는 108 페이지에 이르는 속기록을 작성한 일도 있었다고 밝힌다. 편집자가

정정이나 사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지면에 반영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담당자가 불만을 보내온 사람에게 취지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네 번째의 역할은 옴부즈맨칼럼을 쓰는 일이다.

칼럼은 지면에 비판적인 내용이 태반이다. 칼럼은 독자의 불만을 소개한 다음 이에 대한 편집자의 응답을 게재하고 맨 나중에 옴부즈맨의 코멘트를 쓴다. 해당 편집자중에는 옴부즈맨과 틀어져서 말도 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고 하니 칼럼 내용은 상당히 준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옴부즈맨의 존재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회사에 대해 어떠한 공헌을 했느냐는 물음에 대한 겔판드씨(스타 트리뷴)의 답변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내가 회사를 위해 공헌한 일은 단 한가지. 그것은 '독자가 신문을 비판할 수 있는 애버뉴(대통령)를 만들어 온 일이다」 또 워싱턴 포스트의 하워드씨는 1960년대, 70년대의 베트남반전, 흑인폭동 등 민중들의 권력비판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신문도 시민들의 비판에 들어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워싱턴 포스트는 물론 전미 각지의 옴부즈맨설치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은 미디어 시장을 과점 하는 신문에 대한 독자의 비판의 회로로서 준비 또는 대비되고 있는 장치라는 것을 거의 모든 옴부즈맨들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시찰도중 실제로 본 옴부즈맨들의 활동이 위의 말들을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신문사가 갖고 있는 기사심사기구와 미국의 옴부즈맨제도의 차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첫째, 일본의 기사심사 스템은 회사의 종업원인데 반해 미국의 옴부즈맨은 계약상 종업원의 지위를 떠나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일본의 기사심사기구는 독자들의 불만에 대응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옴부즈맨은 불만을 접수하여 지면에 반영하고 대량의 불만을 받아 그것을 편집국 사랑들과 토론하여 그 취지를 환기시키고 있다. 셋째, 일본의 기사심사 부는 「신문비판」의 칼럼을 갖고 있지 않으나 옴부즈맨은 직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